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05호)

2025.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희 · 임미애 · 이기현 · 김한규 · 박홍배 · 최기상
· 박상혁 · 홍기원 · 허종식 · 맹성규 · 김남희 · 손명수
· 복기왕 · 한민수 · 김정호 · 황 희 · 윤후덕 · 이정문
· 한준호 · 문진석 · 민형배 · 윤종균 의원(22인)
2. 제 안 일 : 2024. 10. 29.
3.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④ (생 략)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경 력단절여성</u> 등의 경제활동 참여 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 ----- <u>경력보 유여성</u>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과 재취업 지연, 하향 취업에 따른 국가 경쟁력 손실이 심화
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
성인력의 경제활동 촉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8. 6.22. 시행)¹⁾ 및 2008. 6.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촉진법」의 제정(2008.12. 6. 시행)²⁾으로 법률에 처음 규정되었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제2조제1호³⁾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수동적 의미로 인하여 사회 경력이 중단된 기간의 육아·가사 등 가정 내 돌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구직여성의 심리적 위축은 물론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력단절이 지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021. 12. 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2022. 6. 8. 시행)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2021. 11. 4.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 전에 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고자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용어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5).

한편, 정부는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경제활동을 시작·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6)해왔으나,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7)

5) [참고자료]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6) 관련사업 및 추진현황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1년	67,83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지원 * 취창업 인원 : 181천명 • 재직여성·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직장적응·복귀 및 직장문화 개선 지원 * 여성 67,897건, 기업 : 2,375개
‘22년	71,15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지원 * 취창업 인원 : 162천명 • 재직여성·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직장적응·복귀 및 직장문화 개선 지원 * 여성 73,491명, 기업 : 3,357개
‘23년	72,59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지원 * 취창업 인원 : 166천명 • 재직여성·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직장적응·복귀 및 직장문화 개선 지원 * 여성 85,372명, 기업 : 2,888개
‘24년	73,46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지원 * 취창업 인원 : 169천명 • 재직여성·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직장적응·복귀 및 직장문화 개선 지원 * 여성 75,100명, 기업 : 4,352개

자료: 여성가족부

7)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 만 25~54세 미혼·기혼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여성 중 42.6%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결혼·출산·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바 있고,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54.3%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경력단절 기간은 8.9년으로 나타나는 등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이 5년 이상인 비중이 64.1%에 달하여, 한번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비취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경력직의 이미지로 치환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전문성, 가능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⁸⁾.

다만, 현행법의 취지는 여성 인력이 생애사적 이유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개인만의 원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기제에 따른 ‘단절’로 명명함으로써 국가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8) 법제처가 실시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바꾸어 긍정적 어감으로 표현”하자는 제안으로, 이와 같이 경력의 ‘단절’이 아닌, 경력연결, 전환, 이동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오랜 기간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용어 변경이 경력단절의 심각성, 중요성, 구조적 문제성 등을 희석·경감할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 발의안, 제2994호)이 우리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결혼·임신·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 직장에서 경험하는 차별 등 그간 사회적으로 공유된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가 희석될 우려가 있고,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경력보유여성’ 관련 조례

연 번	지 자 체	조 례 명
1	경 기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경 기도 군 포 시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	경 기도 성 남 시	성남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4	경 기도 수 원 시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5	경 기도 안 양 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6	경 기도 양 주 시	양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7	경 기도 오 산 시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8	경 기도 의 왕 시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9	경 기도 파 주 시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0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11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12	경 상 남 도 사 천 시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3	대 구 광 역 시 수 성 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4	대 전 광 역 시 동 구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5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16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7	서 울 특 별 시 강 서 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18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19	서 울 특 별 시 노 원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20	서 울 특 별 시 노 원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21	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2	서 울 특 별 시 성 동 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23	서 울 특 별 시 성 북 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4	서 울 특 별 시 은 평 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5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6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조례

연 번	지 자 체	조 례 명
27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8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9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1	충청남도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32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3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3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자료: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2025. 1. 7. 기준), 조문 내 단순 조례 인용 제외, 가나다순